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4113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70	송재봉의원	2024.11.29.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2		2208685	박성민의원	2025. 3. 6.	제429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 간 합의에 따라 체결한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당사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재심의 청구 절차를 도입함(안 제7조의2 등)

나.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상생협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등)

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공개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4항)

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구성과”를 “구성, 위원의”로, “및 운영”을 “운영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로 한다.

1의2. 제7조의2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를 “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

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도”를 “제6항에도”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내에 재심의 청구가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심의 청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상생협약)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와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 간에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협약당사자의 상생협약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생협약이 종료된 경우 상생협약 종료에 책임이 없는 소상공인단체인 협약당사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당사자 간의 상생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에”를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이후 체결된 상생협약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협약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의2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⑤ ----------구성, 위원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한다.	----------.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하여야-----. ----------.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내에 재심의 청구가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	⑥ 제4항에----------

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설>	----------. ⑦ ----------제6항에도----------.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7조의2(재심의 청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상생협약)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와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 간에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협약당사자의 상생협약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생협약이 종료된 경우 상생협약 종료에 책임이 없는 소상공인단체인 협약당사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당사자 간의 상생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 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 제한 권고 등) ①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이행강제금) ① · ② (생략)	제10조(이행강제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	①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

종의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